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233

발의연월일: 2025. 2. 18.

발 의 자: 강준현·김남근·김현정

문진석 • 서미화 • 김문수

천준호 • 박정현 • 이재관

서영석 · 이광희 · 송재봉

정태호 · 민병덕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계약승환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및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회사를 대상 으로 한 계약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같은 보험회사 내에서의 경우와 달리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을 소멸시키면서 부당한 계약승환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간의 비교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그러나, 2024년부터 신용정보원이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모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이 가 능해진만큼 동일한 보험회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다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부당보험계약승환의 경우에도 적용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두 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4항). 법률 제 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4항 중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을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소멸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		
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 ③	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4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제5호			
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		
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소		
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	멸된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			
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	<u>.</u>		
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